

제2차산업경제위원회
2015.7.3(금) 10:00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신선기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6월 23일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6월 25일

3. 제안 이유

-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난 해소 및 신기술개발 사업화 촉진을 위한 펀드에 출자하기 위함이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 설명(안 제2조)

-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

나. 기금의 관리·운용 중 투자조합 출자금 추가(안 제5조)

-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금

다. 기금의 지원대상자 추가(안 제6조)

-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난 해소 및 신기술개발 사업화 촉진을 위해 펀드에

출자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- 다만,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현황과 기금 운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,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